



## 독일 경쟁제한 방지법(GWB) 하의 공공조달

정보신청기관 :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I. 경쟁제한 방지법하의 공공조달

#### 1. 서론

공공조달(公共調達)<sup>1)</sup>에 대해 국내에서 주로 정부조달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구매(購買)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 둘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정부구매라 하면, 중앙과 지방정부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인 재화, 즉 소모품, 비품, 시설 등을 적량(適量), 적가(適價)로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달리 조달이란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건을 인수하여 저장하였다가 수요 부처에 인도하거나 또한 비물질적인 용역을 들여오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것이므로 구매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달은 구매기능을 통하여 또는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달과 구매를 명확히 구

별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공공조달의 중요성은 각 중앙 그리고 지방행정기관 등이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용품, 비품, 시설, 용역 등을 적기(適期)에 확보하고, 대량성과 경쟁성을 통해 능률적으로 구매, 조달을 함으로써 예산절약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競争制限防止法, 이하 GWB)<sup>2)</sup> 내의 공공조달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도록 한다.

#### 2. 입법

공공조달(公共調達)은 1999년 1월 1일에 경쟁제한방지법의 제6차 개정<sup>3)</sup>에 의해 본법내의 제4장으로 편입되었다.



1) 독일어: Öffentliche Aufträge

2) 독일원문: Das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 약어로 GWB.

### 3. GWB 제 4 장 공공조달의 구성

#### 제 1 절 위임절차 (Vergabeverfahren)

- § 97 총칙(Allgemeine Grundsätze)
- § 98 조달위임자(Auftraggeber)
- § 99 공공조달(Öffentliche Aufträge)
- § 100 적용범위(Anwendungsbereich)
- § 101 위임의 종류(Arten der Vergabe)

#### 제 2 절 심사절차(Nachprüfungsverfahren)

##### I. 심사관할기관(Nachprüfungsbehörden)

- § 102 기본규정(Grundsatz)
- § 103 위임심사지위(Vergabeprüfstellen)
- § 104 조달부(Vergabekammern)
- § 105 구성, 독립(Besetzung, Unabhängigkeit)
- § 106 기구, 기관(Einrichtung, Organisation)

##### II. 조달부에서의 절차 (Verfahren vor der Vergabekammer)

- § 107 도입, 청원(Einleitung, Antrag)
- § 108 형태(Form)
- § 109 절차 참여자, 소집(Verfahrensbeteiligte, Beiladung)
- § 110 검사기본규정(Untersuchungsgrundsatz)
- § 111 서류심사(Akteneinsicht)
- § 112 구두 변론(Mündliche Verhandlung)
- § 113 속심(Beschleunigung)
- § 114 조달부의 결정(Entscheidung der

Vergabekammer)

- § 115 위임절차의 정지(Aussetzung des Vergabeverfahrens)

##### III. 즉시 항고(sofortige Beschwerde)

- § 117 기간, 형태(Frist, Form)
- § 118 효력(Wirkung)
- § 119 항고절차 참가자(Beteiligte am Beschwerdeverfahren)
- § 120 절차규정(Verfahrensvorschriften)
- § 121 승인에 대한 예비결정(Vorabentscheidung über den Zuschlag)
- § 122 항고심의 경과에 따른 위임절차의 마무리(Ende des Vergabeverfahrens nach Entscheidung des Beschwerdegerichts)
- § 123 항고결정(Beschwerdeentscheidung)

#### 제 3 절 기타규정(sonstige Regelungen)

- § 125 권한남용에 대한 손해배상(Schadensersatz bei Rechtsmissbrauch)
- § 126 신뢰회손의 대체 청구(Anspruch auf Ersatz des Vertrauensschadens)
- § 127 권한위임(Ermächtigungen)
- § 128 조달부에서의 절차비용(Kosten des Verfahrens vor der Vergabekammer)
- § 129 조달심사지위에서의 비용(Kosten der Vergabeprüfstelle)

## II. 공공조달(Öffentliche Aufträge)

### 1. 공공조달의 내용

GWB 상의 공공조달의 의미는 본 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공공조달이라 함은 공공의 지위에서 조달위임을 하는 자(이하 공공조달위임자)<sup>3)</sup>와 재화(財貨), 건축(建築) 또는 용역(用役)을 업으로 하는 자와의 유상(有償)계약과 더불어 용역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광고(懸賞廣告)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4)</sup> 공공조달위임자는 비록 그가 소위 “부분별 위임자”(Sektorenauftraggeber)처럼 공적인 과제를 사법적인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국가와 그의 하위부서로 간주된다. 공공조달위임자는 GWB상에 규율된 조치와 투명한 위임절차에 따라 재화, 건축 그리고 용역을 조달한다. 기본적으로 위임절차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본 법에 의해 금지된다. 기타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연방 또는 지방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조달은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으며 신뢰할만한 사업자(혹은 기업)에 위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조달위임자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것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제97조 GWB).

각 조달의 내용을 법규정에 비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재화조달(Lieferaufträge)

재화조달은 물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특별히 이에 해당하는 것은 구매 또는 할부구매(Ratenkauf) 그리고 리스, 임대나 구매를 전제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질권설정 등이다.<sup>5)</sup>

#### (2) 건축조달(Baufaufträge)

건축조달의 대상은 공공조달위임자의 요구에 따른 제3자에 의한 건축기획안에 따른 시공 또는 설계 등이다.<sup>6)</sup>

#### (3) 용역계약(Dienstleistungsaufträge)

용역조달이라 함은 본 조의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현상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의미한다.<sup>7)</sup>

#### (4) 현상광고(Auslobungsverfahren)

본 장에서 규정하는 현상광고는, 어떠한 계획에 대한 가액의 분포를 가진(또는 가지지 않은) 평가위원(Preisgericht)을 통한 비교평가라는 점



3) 원문: Öffentlicher Auftraggeber

4) 제99조 제1항 GWB

5) 제99조 제2항 GWB

6) 제99조 제3항 GWB

7) 제99조 제4항 GWB



에 근거하여 조달위임자에게 도움이 되는 현상 광고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sup>8)</sup>

공공조달에 있어 구매와 동시에 용역의 제공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용역의 가액이 구매가액을 넘어서는 경우 이를 용역조달로 본다. 또한 용역제공에 건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주요계약과의 관계에서 부과작업일 경우, 이를 용역조달로 본다(제99조 제6항 GWB).

## 2. 공공조달위임자

공공조달위임자는 본 법률 제98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간략히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99조

1. 지역단체<sup>9)</sup>와 그의 특별재단,
2.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 사법상의 법인으로서 그 주요관심사가 비상업적인 것이며, 공공단체<sup>10)</sup>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
3. 소속 회원이 각1 번이나 2번에 해당하는 조합,

4. 사법에 근거한 특정 기업으로, 식수, 전기, 가스 그리고 난방공급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업,
5. 사법에 근거한 기업으로서, 그 일반적인 행위가 위의 각1번에서 3번에 지위에 근거하여 50%이상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경우,
6. 건축면허를 받은 자.

## 3. 적용범위

유럽입법 Nr.1422/2007<sup>11)</sup>에 의해 유럽연합회원국내의 공공조달에 관한 한계가액(限界價額)<sup>12)</sup>이 설정되었고 독일은 위임시행령(Vergabeverordnung)으로 이를 적용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유럽입법에 의해 정해진 한계가액은, 건축조달의 경우 5,150,000유로, 특정 연방기관의 재화나 용역의 경우 133,000유로, 수도나 에너지 공급 또는 교통영역의 경우 412,000유로, 기타의 경우 206,000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GWB의 규정은 이 위임시행령이 정한 조달가액(Auftragswert)을 넘는 경우에만



8) 제99조 제5항 GWB

9) Gebitekörperschaft 는 법인으로, 그 구성원이 각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0) 본문의 Öffentliche Hand는 공법상의 단체를 총칭하는 바, 독일의 분트(Bund), 란트(Land), 지방도시(Gemeinde)를 포함한 독립적인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1) VERORDNUNG (EG) Nr. 1422/2007 DER KOMMISSION vom 4. Dezember 2007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4/17/EG und 2004/1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im Hinblick auf die Schwellenwerte für Auftragsvergabeverfahren, 즉 입법지침이 아닌 법률로 회원국을 직접구속한다.

12) 독: Schwellenswert

적용된다 (제100조 제1항 GWB). 또한 본 규정은 근로계약을 위해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위임도 마찬가지로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100조 제2항 GWB

- a. 군인의 파견과 관련한, 국제적 협정에 근거한 위임이며 특별한 절차가 적용되는 위임,
- b. 독일연방공화국과 하나 혹은 다수의 국가간에 맺어진 국제협정에 근거한 위임으로, 타 협정당사국이 유럽 경제구조내(Europäische Wirtschafttraum)에 있지 아니하고, 협정이 협정당사국 간에 공동으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이를 통해 또 다른 절차규정이 적용되는 위임,
- c. 어떠한 국제기구의 특별한 절차에 근거를 둔 위임,
- d. 독일연방공화국의 법과 행정규정에 합치하여 기밀(Geheim)로 선언되었거나, 그 시행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가 필요하거나 또는 그것이 국가보안(Sicherheit)의 중대한 관심사의 보호에 기여하는 위임,
- e. 그 위임이 유럽공동체 창설조약 제296조 제1항 b의 적용범위에 놓여있는 경우,
- f. 그 위임이 수도물이나 에너지공급 영역 또는 교통이나 통신영역을 업으로 하고 있는 조달위임자에 의해, 그 스스로가

종사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 g. 특정한 사인에게 위임되는 경우,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 위임자가 동법 제98조의 1번, 2번 또는 3번에 해당하는 경우와 또 법률과 법령에 근거한 업무 조달의 배타적 권리를 가진 자인 경우,
- h. 토지나 건물 또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소유나 임대관계에 대한 위임 또는 그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임,
- i. 연결된 사업자의 용역에 대한 위임으로, 그가 제127조에 따른 법령에 의해 가깝게 정해진 경우와 위임자는 수도물과 에너지공급영역 또는 교통이나 통신영역에 임하고 있는 경우,
- j. 방송의 송신에 관한 위임,
- k. 음성교환서비스, 텔렉스서비스, 유동 전화서비스, 무전서비스와 위성통신에 대한 위임
- l. 중재재판업무나 화해재판업무의 위임,
- m. 유가증권의 제출, 판매, 구매 또는 이전과 관련되거나 중앙은행의 업무 같은 금융기관과 관련한 자금업무의 위임,
- n. 연구와 발전용역의 위임.

#### 4. 계약규정

조달의 시행은 계약규정(Verdingensordnungen)에 의해 구체화되는 바, 조달을 위한 계약법령은 공고기관의 공고(Ausschreibung)와 조달



위임을 세부 규정하고 있으며, 각 공공조달, 즉 건축, 재화, 용역의 조달에 있어 동일하지 않은 계약법령이 적용된다.

### (1) 계약규정의 종류

- A. VOB/A<sup>13)</sup> - 건축조달의 경우
- B. VOL/A<sup>14)</sup> - 재화와 상업적 용역조달의 경우
- C. VOF<sup>15)</sup> - 용역조달이긴 하나 조달 이전에 미리 정확하고 확정적으로 기술될 수 없는 부분이거나, 또한 자유업종의 범주에서 조달되어지는 경우

### (2) 계약규정의 구성

VOB/A 와 VOL/A 의 경우는 다수의 절(Abschnit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의 하위항목에는 유럽차원의 조달위임절차규정을 독일 국내절차로 현실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총칙적인 성격의 위임기본규정들, 유럽차원의 조달위임절차에 있어서 권리보호규정 등은 경쟁제한방지법과(GWB)과 공공조달의 위임에 대한 시행령(VgV)<sup>16)</sup>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VOB/A 와 VOL/A의 경우, 제1절에서는 공공조달에 있어서 그 조달가액이 한계가액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절에서 제4절까지는 조달가액이 한계가액을 넘어서는 경우의 위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VOF 의 경우, 공공조달에 있어 한계가액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 법령에 따라서 분류된 공공조달위임자에 대한 위임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계약규정을 도식화 하면 <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위임의 종류

계약규정(Verdingungsordnung)은 3가지의 다른 절차를 상정하고 있다. 그 종류로 크게 공개경쟁절차와 제한경쟁절차로 나눌 수 있으며, 제한경쟁절차로는 비공개절차와 교섭절차를 들 수 있다.

#### A. 공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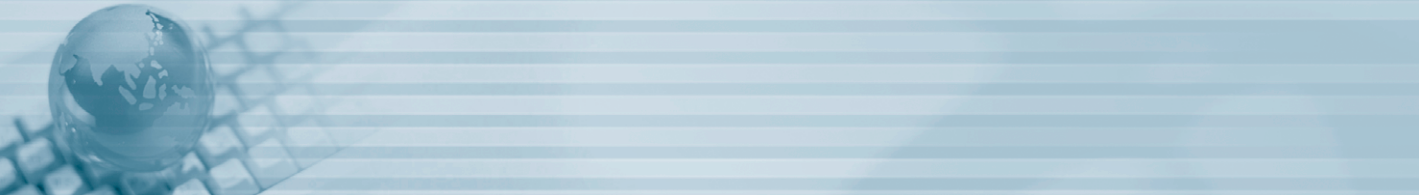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공개절차는 요식(要式)적인 절차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제한되지 않은 공개된 상태에서



- 13) Die Vergabe- und Vertragsordnungen für Bauleistungen. 2006년 공포된 전문의 웹주소: [http://www.bmvbs.de/Anlage/original\\_982127/VOB-A\\_-Ausgabe-2006.pdf](http://www.bmvbs.de/Anlage/original_982127/VOB-A_-Ausgabe-2006.pdf)
- 14) Die Verdingungsordnung für Leistungen: 약자로 VOL,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eil A 는 위임에 대한 총칙 (Allgemeine Bestimmungen für die Vergabe von Leistungen)을 그리고 Teil B는 용역의 시행을 위한 일반계약관계 (Allgemeine Vertragsbedingungen für die Ausführung von Leistungen) 을 정하고 있다. 2006년 공포된 전문의 웹주소: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Gesetz/verdingungsordnung-fuer-leistungen-vol-a.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
- 15) Die Verdingungsordnung für freiberufliche Leistungen: 약자로 VOF, 대부분은 설계용역(Architekt-)이나 엔지니어용역 (Ingenuier-)과 같은 자유업종에 대한 공고(Ausschreibung)과 용역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본 규정은 VOB와 VOL을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6) Verordnung über die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간략히 Vergabeverordnung 이라고도 하며 VgV로 줄여 사용한다. 공공조달의 위임에 관한 시행령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 표 1 〉

제98조달의 위임자		건축조달	재화조달	자영업자의 용역조달		상업적 용역조달
				미리 예정 가능한 조달	미리 예정 불가능한 조달	
제1번 지역단체와 그의 특별재단	고전적인 영역	VOB/A 2절, 제 6조 S.1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VOF 제5조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하위부서영역으로, 수도공급과 육지, 해상교통	VOB/A 3절, 제 7조 I Nr.2 VgV	VOL/A 3절, 제 7조 I Nr.1 VgV	VOL/A 3절, 제 7조 I Nr.1 VgV	SKR 2004/17/EG <sup>17)</sup> 의 직접적용	VOL/A 3절, 제 7조 I Nr.1 VgV
	하위부서영역으로, 전기, 가스 및 난방공급 그리고 항공교통	VOB/A 4절, 제 7조 II Nr.2 VgV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SKR 2004/17/EG의 직접적용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제2번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 사법상의 법인으로 그 주요관심사가 비상업적인 것이며, 공공단체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	고전적인 영역	VOB/A 2절, 제 6조 S.1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VOF 제5조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하위부서영역으로, 수도공급과 육지, 해상교통	VOB/A 3절, 제 7조 I Nr.2 VgV	VOL/A 3절, 제 7조 I Nr.1 VgV	VOL/A 3절, 제 7조 I Nr.1 VgV	SKR 2004/17/EG의 직접적용	VOL/A 3절, 제 7조 I Nr.1 VgV
	하위부서영역으로, 전기, 가스 및 난방공급 그리고 항공교통	VOB/A 4절, 제 7조 II Nr.2 VgV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SKR 2004/17/EG의 직접적용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제3번 그 회원이 각 1 번이나 2번에 해당하는 조합	고전적인 영역	VOB/A 2절, 제 6조 S.1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VOF 제5조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하위부서영역으로, 수도공급과 육지, 해상교통	VOB/A 3절, 제 7조 I Nr.2 VgV	VOL/A 3절, 제 7조 I Nr.1 VgV	VOL/A 3절, 제 7조 I Nr.1 VgV	SKR 2004/17/EG의 직접적용	VOL/A 3절, 제 7조 I Nr.1 VgV
	하위부서영역으로, 전기, 가스 및 난방공급 그리고 항공교통	VOB/A 4절, 제 7조 II Nr.2 VgV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SKR 2004/17/EG의 직접적용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제4번 사법상의 특정 기업	하위부서영역으로, 전기, 가스 와 난방공급 그리고 항공교통	VOB/A 4절, 제 7조 II Nr.2 VgV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SKR 2004/17/EG 의 직접적용	VOL/A 4절, 제 7조 II Nr.1 VgV
제5번 사법에 근거한 기업으로서, 그 일반적인 행위 가 위의 각1번 에서 3번에 지 위에 근거하여 50%이상의 자 금조달이 이루 어질 경우		VOB/A 2절, 제 6조 S.1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VOF 제5조 VgV	VOL/A 2절, 제 4조 I VgV 와
제6번 건축면허를 받 은자			VOL/A 2절, 제 6조 VgV			

조달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된 경우를 말한다.

### B. 비공개 절차

비공개 절차는 공개절차와 마찬가지로 요식적 절차이나, 제한된 수의 사업자가 조달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된 경우라는 점이 다르다.

### C. 교섭절차<sup>18)</sup>

교섭절차에 있어서는 위임이 어떤 특정한 형식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조달위

임자는 조달조건을 교섭하기 위해 선택된 자와 대화에 임하는 것이다.

### (4) 절차의 선택

조달위임자는 위에 기술한 3가지의 절차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계약규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 A. VOB/ VOL

VOB/A와 VOL/A 의 제2절과 제3절에서는 공개절차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17) RICHTLINIE 2004/17/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1. März 2004 zur Koordinierung der Zuschlagserteilung durch Auftraggeber im Bereich der Wasser-, Energieund Verkehrsversorgung sowie der Postdienste.

18) 원문으로 Verhandlungsverfahren, 한국의 수의계약 (隨意契約), 즉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경우에는 비공개 절차와 교섭절차는 오직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채택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동 제4절에서는 3가지 절차 중 조달위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하고 있다.

## B. VOF

VOF 규정은 용역(Dienstleistung)조달에 관해, 교섭절차와 더불어 경쟁과 계획경쟁(Wettbewerb und Planungswettbewerb)을 상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경쟁은 현상광고를 의미한다.

## III. 심사절차(Nachprüfungsverfahren)

### 1. 심사관할 기관

GWB는 독립적인 심사절차를 통해 입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입찰자는 1심으로서 조달부 그리고 2심기관으로서 지방법원(OLG)에 제기할 수 있다.

### 2. 조달부(Vergabekammer)에서의 절차

입찰자는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달위임자의 결정전에 1심으로 조달부에 항고할 수 있다. 조달부는 오직 청원에 의해서만 관할하는바,

본 청원권은 해당 조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있다. 침해는 위임규정이 간과(看過)되었을 경우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입찰자의 권리보호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1) 경락<sup>19)</sup>결정에 전의 권리보호<sup>20)</sup>

입찰자는 조달위탁자의 결정전에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1심으로 조달부에 항고할 수 있다. 청원신청자는 그가 이미 위임규정의 간과, 미공고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없고, 자신이 문제를 알았을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Rugepflicht)하지 않으면, 그 청원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입찰자의 청원이 명백하게 불허되거나 근거없지 않는 한, 조달부는 조달위임자에게 공지한다. 청원의 접수후에 조달위임자는 조달부의 결정시까지 그리고 OLG에 즉각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경락결정을 승인할 수 없다.

조달부는 구술변론(口述辯論) 후, 정해진 5주간의 기간 내에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해진 규정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19)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관 광의로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매수신청을 최고(催告)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신청인에게 승락을 하여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승낙이 바로 경락(競落)이다. (법률용어사전 참조)

20) 제107조~제115조 GWB 규정에 해당



### (2) 경락결정과 경락승인 사이의 권리보호

제안서의 검토와 평가 후에 조달위임자는 경락결정을 한다. 이 경락결정 전에 그는 제13조 VgV 에 따라서 결정에 고려되지 못한 입찰자에게 본 결정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이 고지는 경락결정 14일 이전에 해야 한다. 기간은 조달위임자에 의해 고지가 송부된 다음날부터 산정되며, 이 기간 내에 입찰자는 조달위임자의 결정을 조달부에서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조달위임자를 통해 입찰자에게 고지가 되지 않거나, 당해 기간 내에 그가 경락승인을 받 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 (3) 경락승인 후의 권리보호

조달부를 통한 절차와 결정은 하나의 제안 혹은 제안서에 대한 경락승인으로 끝이 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락을 통해 하나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해당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다. 경락의 승인 후에는 무시된 입찰자의 권리보호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할 것이다. 경락승인은 GWB의 규정에 따라 취소불가능이다(제114조 2항 GWB). 무시된 입찰자는 법률상 권리침해의 주장을 통해서만 청원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심사절차의 특수성은 공공조달자가 위임절차의 심사를 조달부에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3. 지방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에서의 절차<sup>21)</sup>

조달부의 결정에 반해서 지방고등법원(이하 OLG)에 즉시항고(即時抗告)가 가능하다. 이것은 2주 기간의 구속을 받는 바, 이는 결정의 송부와 함께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에 서류로 근거사유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절차에서 공법상의 법인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대리가 강제된다. OLG가 항고를 인정하면 조달부의 결정은 폐지된다. 법원은 직접 결정을 내리거나 조달부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조달부의 결정에 대한 지연(遲延)효를 가진다. 따라서 항고진행중에 조달위임자는 경락을 승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그리고 동시에 발생한 조달위임자의 청원에 의해 법원은 즉시항고의 성공여부를 고려하여 위임절차의 계속과 경락승인을 허가 할 수 있다. 항고법원은 청원의 접수 후 5주 이내에 경락허가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려야 한다.

## IV. 결 어

공공조달의 혹은 정부조달은 국제경쟁과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시장규모나 거래가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영역으로 구별되



21) 제116조~제124조 GWB의 규정에 해당

어 있었고, 더 나아가 공공조달의 기능 혹은 장점으로서 물품시장의 간접지원이나 시장조절기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경의 벽에 의해 보호를 받아 온 이러한 조달영역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규모증가와 더불어 국제적 경제력이 상승함에 따라 그에 합당한 상호개방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의 하나인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서명하였고, 이는 1997년 1월부로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정부관련 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정부조달시장을 국내생산자 위주의 독점적 공급 상태에서 벗어나 경쟁개방시스템으로 편입시킬 것과 일방적인 무역 왜곡 정책 방지, 그리고 자유무역의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의 대응 방향이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그 구체적 법규정으로 살피고 그 비교를 통해 조금이나마 한국 조달규정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석 종 욱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